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7. 8.(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7월 6일에 있었던 제38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6-39-14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한 피심인에 대해 아래의 과태료 부과(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주)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아래의 피심인(1, 2, 3, 4, 5)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배경은 금년도 초부터 법인영업 등 일부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환되는 등 시장과열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2사에 대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실태점검을 하는 도중에 LGU+의 법인영업 부문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현저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하였으며, 6월 1일과 6월 2일간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방해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경과로 지난 6월 16일 동 사항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드렸고, 그때 위법행위 조사 중인 본 건과 구분하여 우선 처리하기로 논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관계입니다. 먼저 기초사실로서 LGU+ 법인영업 부문의 사실조사에 응대하지 않은 피심인은 2, 3,

4, 5 모두 현재까지 임직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위사실로서 사실조사 1일째입니다. 조사관이 오전 10시 50분경에 LGU+ 본사를 방문하여 공문서 제시와 함께 조사목적, 이유, 대상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즉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심인 각 3, 4, 5는 자료제출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당일 오후 4시까지는 제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오후 6시가 지나도록 협조하지 않았으며, 오후 6시 15분경 조사관들이 철수하는 도중에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제공, 그리고 조사개시일 7일 전 통보 등이 선행되어야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조사 2일째는 조사관들이 오전 9시 45분경 LGU+ 본사를 재차 방문하여 피심인 2에게 즉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심인 2는 제출한 문서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고, 조사관은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오전 10시경에 철수하였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일 오후 4시 47분경에 '단말기유통법 제13조에 근거한 사실조사'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조사 3일째는 조사관이 LGU+ 본사를 다시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을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들이 6월 1일, 2일간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 전 통보 미준수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관이 공문서 제시와 함께 구두로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심인들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여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당하지 아니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안)이 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거부·방해한 피심인 1, 2, 3, 4에 대해서 각각 1회 위반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준법지원팀의 과장은 상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피심인의 제출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건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상 제재 안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출석해서 의견도 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피심인들이 출석을 안 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출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것으로써 저희들에게….

○ 고삼석 상임위원

- 피심인 제출의견을 보면 당연히 LGU+는 법인으로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고, 그리고 <붙임 4> 의견서를 보면 피심인들이 서너 명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보면 단일하게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일하게 의견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의견을 냈는데 제출된 의견에 의하면 일종의 개인에 대해서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인만이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심인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피심인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의견이 LGU+에서 낸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피심인 개개인들로서는 의견을 전혀 제출한 것은 없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회사를 통해서 의견을 냈다고 봐야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개인도 제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피심인 제출의견서가 LGU+ 법인명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별첨>이라고 해서 '피심인 2, 3, 4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피심인 2, 3, 4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LGU+의 명의로 제출하였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피심인 2, 3, 4는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낸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용자정책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LGU+의 이런 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1항에 보면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렇게 '거부·방해·기피'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고, 또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3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봐도 거부·방해·기피

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LGU+가 이틀 동안 우리 조사관들에게 보인 반응이나 행태는 ‘거부·방해’ 어디에 해당 된다고 보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이고, 물론 2가지의 이유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일단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거부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 구(舊) 방통위나 그전에 정통부 내지는 통신위원회, 그리고 지금의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크고 작은 광범위한 비협조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용자정책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박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첫 날 본사에서 아직 사실조사에 들어가거나 자료제출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유가 뭐가 됐든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른 사업자의 경우도 거부·방해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사관들을 회피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거부보다는 방해에 가까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거부·방해’ 이렇게 여기에 적시는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부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거부·방해·기피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있는데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거부든 방해든 기피든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부가 됐든 방해가 됐든 기피가 됐든 그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울 수 있는데 그 중하고 가벼운 것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양적으로 1회 위반이나, 4회 이상 위반이나 이 부분에 따른 금액의 차이만 있지, 거부냐, 방해냐, 기피냐, 아니면 그 행위를 했어도 질적으로는 중하냐, 가벼우냐에 따라 그 제재 수준에 차이가 없도록 우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에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거부냐, 방해냐, 기피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에 대해서도 질적인 개념을 고려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방해·기피 각각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냐, 방해냐, 기피냐에 따른 경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경중이 다를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안)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사실조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위법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를 들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가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경중이나 유형의 구분 없이 지금 사무처에서 보고한 대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1회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단지 나중에 사실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징금을 정할 경우에는 경중이나 유형의 차이에 따른 이 사안의 내용을 감안한 적절하고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같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에 따르면 지금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개별 기준에 의할 때는 1회 위반은 500만원, 2회 위반은 1,500만원, 3회 위반은 3,000만원, 4회 이상 위반은 5,000만원, 이렇게 개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그 개별 기준을 시행령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 중의 일반기준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LGU+ 법인영업 사실조사 거부·방해와 관련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할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습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하면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기준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혹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지난번에 SKT의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조사 거부·방해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다 보니까 일반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여쭙 보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통상적으로 위법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가중해 왔는데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가중하는 것이 없이 횡수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해 왔다고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과거에 관례가 이런 조사 거부·방해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횡수를 고려해서 했는데 조사 거부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개별 기준에 따른 1회 위반이나, 2회 위반이나, 3회 위반에 따라 정액으로 꼭 부과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에 따라서 과거에 SKT 때도 같이 동일하게 다 500만원을 부과했던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 거부·방해의 양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사무국의 의견은 그렇고, 위원님들도 혹시 이 규정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LGU+가 그 당시에 우리의 직무수행, 공무수행에 대한 대응행동은 사실조사 거부·방해로 결론을 냈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이 1회 위반인 경우에 500만원 과태료다, 이렇게 나가면 또 전문가 여론층, 언론에서는 ‘숨방망이 처벌이다. 제재가 효과가 있겠느냐?’ 하고, 또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방통위로서는 정해진 법령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법은 국회 입법사항이지만 시행령은 정부입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에 이 사실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1회 위반에 500만원, 1회,

2회, 3회, 4회 위반을 상정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통시장의 현장 판매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점·대리점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을 규정했는데 이통사 대기업 본사와 그 간부들의 거부·방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재효과를 봐서도 일선 판매점·대리점에게는 500만원 과태료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통사 본사 대기업에게는 또 그 간부들에게는 500만원 과태료라는 것이 제재효과가 있겠습니까? 다 회의적입니다. 말하자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사에 대해서 판매점·대리점과 똑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소급 입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시행령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래서 입법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통사 본사와 시장 현장의 대리점·판매점과 구분해서 사실조사 거부·방해 대응행동에 대한 제재수위를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꼭 강경하게 때려라, 강경하게 제재를 해야만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재, 규제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재발 방지에 길입니다. 그래서 이통사 본사 대기업에게는 그만한 효과가 있도록 제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기업의 간부에게는 그만한 효과가 있도록 제재해야 할 것이고, 일선 현장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에는 매출 규모로 보나 수익으로 봐서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과태료는 될 것입니다. 시행령에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니까 현실적이고 실효

성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시행령에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 과태료 부과(안)은 역시 솜방망이다. 미흡하다'는 지적, 비판을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법령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차후에 말하자면 사실조사가 다 끝난 뒤에 과징금을 부여할 때는 또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남겨 놓았다는 설명을 하고, 물론 이번에 안 했으니 그때 더 세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구로서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또 법령에 근거한 그런 제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시행령이 미흡한 면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선안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오늘 이 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흡하지만, 정해진 법령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개별 기준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1회, 2회, 3회, 4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로 구분해서 과태료 금액을 달리 두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조사 거부·방해·기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와 판매점·대리점을 구분해서 과태료 금액을 달리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거부·방해·기피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등이 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 이기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똑같은 액수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가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서 오늘 당장 고칠 수 없다면..., 사실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실조사 결과를 놓고 심의·의결할 때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꼭 취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는 몇 가지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 기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오늘 이렇게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기로 한 이유와 배경이 이번 사태가 대형 이통사업자 본사에서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신속하게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위법성 판단은 LGU+가 위법성이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신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제 생각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어떤 개별행위가 거부에 해당하고 방해에 해당하고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적시했으면 더더욱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행위에 대해서 나열만 하고 포괄적으로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항목별로 개별행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한 대상이 법인과 전무, 상무보, 팀장까지 4명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액수도 똑같이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팀장까지만 임원급이지요? 팀장도 임원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임원은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면 과장은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어서 부과대상에서 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지휘 계통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은 법인 전체, 그 다음에 전무, 상무보, 팀장 이렇게 결재라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말로 과장까지는 봐 줬다, 그렇다면 책임을 차등해서 매겨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선 이렇게 팀장까지만 책임을 물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들이 한 부서에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3개의 부서에서 응대를 했습니다. 2일째에 응대한 분이 법무실에 있는 전무와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상무보가 하나 있었고, 실제 저희들이 직접조사한 대상자가 기업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BS 본부인데 그중에 거기의 담당 책임자로서 담당 팀장이 응대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과장이라고 하는 개인은 법무실 법무실장 밑에 있는 과장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장은 법무실 총 책임자의 직속부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응대하기보다는 법무실장을 보조해 현장에 있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일차의 경우 법무실장이 15분간 거의 다 혼자 응대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었던 과장은 사실상 단순 가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단순 가담자다, 또 적극 가담자다 하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차등하지 않고, 임원급 또는 팀장까지만 일단 책임을 물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휘 계통을 볼 때 가장 큰 책임은 법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전무 이런 식으로 상하 간 통상적

인 지휘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는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물었다면 차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매긴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마치 시행령에 그렇게 가중해서 부과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를 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 할 때 책임소재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경중을 가려서 차등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행령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을 찾더라도 차등해서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가중처벌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잠깐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위법성 판단이 각 피심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위법성 판단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조사 거부·방해라는 것이 여러 개 행위가 다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거부·방해로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지금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사실관계를 다 나열하고 그 사실관계를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부·방해 행위로 판단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여서 이 사실조사 거부·방해라는 특성상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자 2번, 3번, 4번은 임원급이라든지 또는 그들 사이에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임원급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조사 거부·방해와 관련된 3개의 부서가 있는데 3개의 부서의 각 최고책임자인 셈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3개 부서의 가장 최고책임자에게만 부과하고 또 책임자 밑에 있는 부하 직원까지 부과하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준법지원팀의 과장은 소위 법무담당 전무의 바로 직속 부하직원이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총 책임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아서 여기에는 제외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위원장님이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을 말씀하시고, 또 부위원장님이나 김석진 위원님의 말씀을 꼭 들어보았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법인과 개인 3명 모두 500만원을 하자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개별기준이 있고 일반기준이 있는데 일반기준에 의하면 1/2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서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실조사 2일째 피심인 3, 4, 5는 피심인 2와 동석하여 보조적인 응대를 진행', 이런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LGU+ 법인과 피심인 법무 담당에게는 1/2을 가중해서 750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개인 2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500만원을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법인에 대해서만 1/2 가중하고, 2, 3, 4는 그 법인 소속 직원이니까, 그대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제가 선뜻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가 과거에 업무 처리한 것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과거에 SKT의 조사 거부·방해를 할 때 법인과 각 부서의 책임자에게 부과했는데 그때 동일하게 부과한 전례가 있어서 그 전례와의 관계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 법인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 위반행위자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과거의 전례는 또 저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개별 기준을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금액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와 대규모유통업자를 구분해서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높은 금액이 개별기준에 꼭 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에는 그 구분도 없습니다. 조사 거부·방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개별 조직 내지는 개별 유통망 내지는 어떻게 보면 개별 부서별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작년에 SKT의 경우에도 본사 차원에서 일어났고, 이번에 LGU+도 본사 차원에서 일어난 상황 등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시장에 저희가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지금 이 제도의 미비점들을 고려해서 제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찾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 제가 과태료 부과대상에 책임을 묻은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까 박 국장님 설명에는 명확하게 이해가 안됐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3개 부서의 최고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지요?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법인은 차등해서 가중 부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 3, 4의 임원이나 팀장에게는 각 부서별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가중 부과를 하면 다 같이 하고 가중부과를 안하면 같이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법인에 대해서는 1/2 가중하여 75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 3, 4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이나 고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은 2일째 법무담당 전무가 활동한 것이 많다, 그래서 75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두 분 의견은.... 법인만 750만원으로 가중하는 것이 나올지, 아니면 2번 법무 담당 전무에 대해서도 또 가중을 하는 것이 어떨지....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가중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구도, 모양새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법인에 대해서도 500만원이나 750만원이나 큰 부담이 될 수 없고 제재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또 법인의 임원 전무급이면 고위 임원인데 그분에 대해서도 몇 백만원의 제재가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다만 상징적으로 그런 공무수행에 대한 대응행동에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지기 위해 차등을 두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이 좀 더 중한 행동, 책임 있는 행동 또는 지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과 현장 대응행동에서 가장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했던 고위 임원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이고, 일반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박 국장님, 2번과 3번과 4번 사이에 경중이 구분되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 조사관들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피심인 2가….

○ 최성준 위원장

- 2번이 좀 더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1일째도 사실상 시간을 지연하고 또 문서를 제출한 것과 2일째 또 현장에서의 응대는 사실상 법무실 쪽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추측이지 1일째는 2번은 현장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피심인 2는 1일째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때 법무팀의 피심인 5가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결국에는 피심인 5가 나와서 대응을 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결국 피심인 5는 피심인 2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것이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결국 그 내용을 보고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서로 저희들에게 응대한 부분이 사실상 CR 협력 쪽보다는 법무실에서 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이유는 지난달 초에 LGU+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가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무엇보다도 다른 분보다 강력하게 별도의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수용해서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조사와 별개로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단독조사 제재의 필요성,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제재의 적정성 문제는 결국 현재 시행령의 한계로 인해서 일정 정도 비판과 언론의 의문 제기는 저희가 감수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도개선 논의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 지금도 논의가 되는 것이 법인과 판매점·유통점에 차이를 두자, 또 법인과 그 법인 소속의 직원들 간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 우선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법인에 대해서만 여기에 있는 1/2 가중하는 것을 하고, 2, 3, 4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경중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 경중을 가지고 가중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꼭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 4에 대해서는 1회 위반 500만원 과태료 그대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제가 이번에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사실확인보고서를 보니까 법무담당 전무, 이분의 현장행동이 그랬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다. 회사가 나한테 위임했다. 그리고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와 우리 회사가 공문을 보내서 요구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조사 거부·방해 언급을 이분이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래서 차이를 두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대체로 현장 사실조사를 가면 영업부문이나 또는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CR부문이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에 LGU+는 법무담당에서 앞장서서 대응을 했고 말하자면 우리 조사관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점이 특이해 보인다는 점을 처음부터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의문시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실 쪽에 좀 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또 “지금부터는 내가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책임을 지고 한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과태료 부과(안) 중 LGU+ 법인에 대해서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39-14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아울러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시 합의 절차 및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외주제작사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법률이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 내용은 합의의 방식과 합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합의 유무가 과태료 부과 전제가 되는 만큼 양측 간 합의 유무에 관한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울러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를 미디어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될 사항과 수수료의 범위, 위탁계약 체결사실 고지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에는 위탁의 목적과 범위, 위탁조건, 간접광고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광고판매 수수료는 랩법 시행령상 최소·최대범위를 준용하되, 외주제작사와 랩사 간 자율계약에 의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법률로 이동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아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를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중요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고시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현재 법령상 명확한 위임 없이 고시에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있으므로 시행령에 ‘금지행위 판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절차 등’으로 고시 제목을 정하도록 규정해서 위임근거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초 입법 예고된 가상·간접광고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류에 대한 간접광고 금지규정은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7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은 법률로 상향된 것은 당연히 시행령에서 삭제했고, 그다음에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이라는 고시에 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올려서 규정을 한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가상·간접광고 규제 정비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의견을 낸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법령 체계가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개정으로 인해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처끼리 서로 논의해서 그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저희가 그에 따르기로 한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안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 관심행사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장이라서 좀 더 정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히 체계정비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존 시행령에 있던 것이 상향 입법됨으로써 고시에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끌어올리는 정도로 정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내용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없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5월 말 6월 초에 특정 방송사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법제 정비하는 것을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사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8월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정비가 국무회의 의결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다만 이 사안은 내용과 관련된 정비는 올림픽이 끝나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송법과 시행령에 반영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국제 경기의 중계권을 확보하는 환경 하에서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특히 종편이라든가 큰 PP들이 중계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와 종편·보도PP나 유료방송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까지는 현행 제도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가더라도 올림픽 이후에 변화된 미디어 환경, 그리고 갈등의 유형들을 잘 구분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늘 본안 의결과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관한 자료화면 또는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경기에 대한

자료화면을 타 방송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받게 되어 있지요? 2분 자료화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올림픽인 경우에는 4분, 월드컵인 경우에는 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과거의 예를 보면 결정적인 골을 넣는 장면이 화면에 예를 들어서 센터링만 하고 실질적으로 슈팅을 해서 골이 들어간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도를 해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기왕에 무상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일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해서 제대로 좋은 화면을,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넣어야지, 그냥 2분이라는 러닝타임에만 매몰되어서 주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무료 시청권 보장제도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 보편적 시청권에 충실한 화면 제공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법률이 정하고 있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과 막대한 돈을 들인 지상파방송사에서 중계권을 확보한 것, 양자가 균형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조항이 과거 종편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지상파 쪽 방송사들 입장을 들어보면 종편이란 유료방송이 탄생했으니까 과거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상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배 국장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대답하느라고 충분히 대답을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여러 언론, 또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공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보면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여타 방송사, 주로 여기에서는 종편과 보도PP 같은 유료방송사가 됩니다. 거기에서 2차 중계권 협상계약을 하면 자료화면 사용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분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현재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와 그리고 2차 중계권을 구매하려는 종합편성PP 그리고 보도PP들 간에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중계권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이 될 경우 제가 봤을 때 자료화면 제공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일들은 없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관해서 중계권 협상이라는 것이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중계권을 다시 또 주는 것이 아니고 지상파방송사가 중계권을 이용해서 촬영한 화면 중에 자료화면을 유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2차 협상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제도 정비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만약에 사업자들 간 중계권 문제나 아니면 자료화면 제공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기주 위원님이 맡고 계신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기주 위원님께서 워낙 역량이 출중하셔서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오늘의 안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이라는 범국민적 행사의 중요성 때문에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 자료화면에서 골 장면들은 작년의 사례 등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률상 유료자료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요성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사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올림픽을 국민들 모두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말씀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상파, 보도·종편들을 저희 사무처에서는 접촉하고 있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비용을 주고 샀던 중계권에 투입된 돈과 무료 협상권이나 무료자료 제공권에 대한 균형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지시대로 사무처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국민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입장이,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의 발동 대상일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방송사들 간의 자율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들 간에 자율적 협상의 영역인데, 정부 방통위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가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 '보고만 있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때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건 5페이지에 보면 가상·간접광고 규제 정비입니다. 주류,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을 늘려주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안건이 마련됐습니다. 주류의 경우 국민 건강과 특히 청소년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광고 영향력이 커 이것을 늘려주는 것은 반대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제가 처음부터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거기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보류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업도 저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류도 마찬가지고 대부업은 정말 국민 생활에 매우 관련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부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미시경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핵심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소지가 큰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년 전에 신용카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들 중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됐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국민 경제생활에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을 꼭 해야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연 방송광고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방송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 봐야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광고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우선 하나? 국민 가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방송광고 물량을 늘려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우선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점에서 대부업도 광고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지금도 국민 가계부채에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는 관련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또는 기재부와 사전협의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민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 때문에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가 주류광고에 대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부업 광고를 늘려주는 것, 대부업이 왜..., 제가 특별히 이 직종, 이 직업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은행권의 이자율과 그 상환 방법에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영세, 어려운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국회에서도 원내교섭단체 정책 당국자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가상·간접광고 규제 정비안을 입법예고 추진했던 사무처로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어쨌든 입법예고에 동의해 주셨던 그런 안에 비추어 봐서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주류광고나 대부업의 정책 철학적인 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에서 정책철학적인 면에서 보면 이미 그 시간에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철학적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서 이미 철학적으로 용인해줬다, 그것이 허용된 그 시간 안에 개별법과 맞는, 말하자면 다른 부처의 법이지만 법에서 허용된 것을 저희 법 시행령에서, 하위 법 단계에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부업 관련 금융위나 기재부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다 했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관계의견을 제출한바 없습니다. 말씀하신 여가부와 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법체계의 정비추진을 인정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법체계 정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서 주류 측면에서 혹시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체계를 정비한 이후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앞으로 타 부처와 개별법 체계의 정비를 진행할 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송광고의 특성에 대해서 관련부처에 제대로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지요? 그것은 알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광고 종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어떤 광고는 보도프로그램에 못하게 하고, 그러나 연예·오락은 할 수 있게 해 주고 방송광고의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서 그 규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있는 방송광고의 종류에 따른 규제, 제한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송광고의 종류에 따른 특성, 그 영향력에 근거해서 일정하게 제재하고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상·간접광고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류나 대부업 같이 조심해야 할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 다른 중

류보다 좀 더 제한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광고 종류에 따른 제한, 규제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드는 시행령인지, 규칙인지, 시행세칙에 따라서, 방송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러나….

○ 최성준 위원장

-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향후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개정안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기로 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 김재홍 부위원장

- 오늘 의결하는 것이 아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이것은 빠져 나갑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와 기재부의 공식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의견이 없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의견이 없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저희들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처에 그런 의견을 조회한다거나 물어볼 때 방송광고의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간접광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광고는 종류에 따라서, 영향력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과 규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지, 우리는 방송통신의 전문기관입니다. 다른 관련부처는 그런 특성을 알겠습니까? 그렇

게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일정하게 제한하고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모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고 ‘주류나 대부업의 경우 지금까지 영향력이 큰 가상광고를 못 하게 해 왔는데 이것을 늘려주려고 하는데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으로 그 부분은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건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략히 논의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 간 통화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회와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고 보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편집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이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정의)제15호에 따르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월호참사특조위가 방송법 위반으로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을 고발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송편성에 개입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국회에 출석해서 통상적인 업무협조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홍보수석의 항의를 받았던 당시 KBS 보도국장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보도 개입으로 규정한 후배 기자들과 생각이 비슷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논란의 한쪽 당사자인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발언은 홍보수석의 전화를 통상적인 업무협조 혹은 정상적인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도개입, 편성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방송사 외부에서 방송편성에 개입하고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쪽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방송 현업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질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방송법은 권력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

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통화과일을 공개한 KBS 김시곤 보도국장은 이번 사안을 놓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점을 찾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입장에 100% 공감합니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정성 구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완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 대선공약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영방송재정연구회를 통해서 공영방송 재정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국민 여론상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결산국회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 KBS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보도 때문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방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년 5월 9일 세월호 피해 유족들이 KBS의 재난방송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격렬히 항의하고 지금 뉴스에 많이 떠오른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보직을 사퇴하면서 보도의 공정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전체회의에서 '긴급 사안이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KBS의 재난상황 편향성에 대해서 토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KBS의 주요 보직간부 256명이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노조들에 의해 파업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KBS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또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거듭 KBS 사태 조기 수습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일련의 그런 노력과 움직임 끝에 사장이 이사회에서 면직됐고, KBS 기자협회 제작 거부사태에 이은 총 파업사태가 수습 정리됐습니다. 당시에 충분히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지만, 방통위 내부에서 그런 문제제기와 안건 제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근거가 역시 미비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사권은 아니더라도 조사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KBS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이 굉장한 토론대상이었습니다. 정리,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법령을 정비 개선해야 한다는 정도는 합의를 이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행 방송법이나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해서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에 방송통신위원회 직무 수행을 위한 조사권...,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국이 소환, 신문 조사하는 조사와 함께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조사 요구도 조사입니다. 그런 정도의 조사권을 가져야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국민 여론층이나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방통위 관련사항 아니냐?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손 놓고 보고 있었느냐?" 이

렇게 지적만 받고 있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직무수행을 할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사안으로 방송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자,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직권을 동원해서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당시에 제가 제출했던 안건과 주장에 보태져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근거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대화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세월호특조위와 또 전국언론노조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따로 새로 고발해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고발된 사안인 만큼 검찰수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령의 정비와 정책사안을 독립적인 방통위의 대책으로서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방송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을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데에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방송법 제4조제2항을 명백히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침예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통위로서 당장 이 사안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월호특조위와 언론단체들이 고소·고발한 만큼 검찰수사를 봐야 합니다.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님 두 분의 말씀은 방송에 관한 편성은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016년 제39차 방송통신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5분 폐회 】